2026년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 3.

전북국제협력진흥원
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총 칙

1. 목적

○ 본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외국인주민의 사회활동 촉진을 통한 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지침 및 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해석에 따름

2. 관련근거

○ 202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3. 용어 정의

○ "외국인주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 "지원금"이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 촉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 참여 단체 및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정산"이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 및 법인, 개인 등이 사업 종료 후, 지출한 사업비의 집행 내역, 증빙서류 및 잔액 등을 확인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환수"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지원한 사업비 중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반환하도록 결정·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업체계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세부 계획 검토 및 보완	수정 계획 확정
외국인 동호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지원대상 동호회 선정	외국인 동호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국제 협력진흥원

지원금 교부	사업 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외국인 동호회	외국인 동호회 (4~10월)	외국인 동호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5. 운영 주체별 역할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운영지침 제·개정 및 사업운영 절차 개선
▲ 사업 공고, 지원 커뮤니티 심사·선정
▲ 지원 동호회 예산 배정 및 교부
▲ 사업 진행 과정 지도·점검, 결과·정산 보고 관리 및 환수 및 평가

○ 외국인 동호회

▲ 문화교류, 생활체육, 축제, 및 봉사 등 외국인 동호회 자체 기획 행사 운영
▲ 지원금 집행내역 및 집행증빙 등 관리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지도점검 및 사업 운영 협조 등

Ⅱ. 사업참여 및 설계

1. 지원자격

○ (기본요건)

- 외국인 동호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
- 회원의 50% 이상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동호회, 단체, 법인 등)

  * 전북특별자치도 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 》

▲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회원·단체의 복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호회의 설립목적인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인 경우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단체·대표자·임원이 처벌받은 경우
▲ 당해연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또는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는 경우
▲ 사업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추진한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단체 귀책 사유로 인한 포기, 부당집행 적발, 결과보고서 등 미제출 등)
▲ 기타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 (우대요건) 사업목적이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에 기여하는 단체 (가점 최대 5점 부여)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11개 외국인 동호회(단체당 100~250만원 차등지원)

지원금액	단체 수	총 지원규모
합 계	11개	총 2,000만원
250만원	4	1,000만원
200만원	3	600만원
100만원	4	400만원

○ (지원분야) 문화교류, 예술, 생활체육, 축제, 봉사 등 외국인주민과 도민과의 사회통합 및 공공외교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동 범위 증대를 위한 분야

○ **(지원내용)** 전북자치도 내 외국인 동호회가 자체 기획·운영하는 행사(문화교류, 생활체육, 축제, 봉사 등) 경비*

* 행사에 소요되는 운영비, 홍보비, 실비 등에 대해 일부 지원하며, 세부 지원항목은 '예산 편성 기준(2페이지)'을 참고

○ **(지원기간)** 2026. 4 ~ 10월

○ **(지원방식)** **지원금 교부**(행사일로부터 2~3개월 전 지원)

※ 투명한 지원금 관리를 위해 대표자 또는 단체 명의의 지원금 관리통장을 통해 입금

○ **(유의사항)** 신청 금액을 토대로 심사위원에서 지원금액 최종 결정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3. 3.(화) ~ 3. 25.(수)*** / 23일간 ※ 필요 시 연장 공고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해 인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gina@jbica.kr)

○ **(접수언어)** 한국어

○ **(제출서류)**

1)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1]
2) 사업계획서 [양식2]
3) 단체 회원 명부 [양식3]
4) 서약서 [양식4]

○ **(문 의 처)**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교류팀 담당자(☎063-280-6133)

5. 심사 · 결과 발표 등

1 서류심사

○ **(심사방법)** 서류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심사

○ **(심사대상)** 2026년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신청단체

○ **(심사내용)** 사업의 필요성, 운영 방법의 구체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참가 규모 및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 **(심사일정)** 2026. 3월 중

② 결과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 **(결과발표)** 2026. 4월 중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오리엔테이션)** 2026. 4월 중(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 선정단체 대표자 또는 회원 대상, 지원사업 개요 및 예산·사업 운영 유의사항 등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당초 신청한 금액과 상이하거나 지원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선정단체는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당해연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사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관련 지침 및 정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업이 가능함

○ 사업 내용의 주요 변경(일정, 장소, 예산 항목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 자료(책자, 배너, 포스터 등), 언론보도 등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후원 명기 필수**

○ 지원 결과물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공익·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다수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동호회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교류팀(☎ 063-280-6133)으로 문의

Ⅳ. 사업운영 및 관리

1. 교부 결정 및 관리

□ 지원금 교부

○ **(교부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1개 외국인 커뮤니티

○ **(교부절차)** 지원단체 선정 → 교부신청서 제출(행사 세부 계획서 및 예산내역서 포함) → (필요시)수정·보완 → 교부결정·송금

○ **(교부시기)** 자체 행사일로부터 2~3개월 전

○ **(교부방법)** 동호회 단체(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

○ **(제출서류)**

1) 교부신청서(행사 세부계획서 및 예산내역서 포함) [양식 10]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11]
3) 통장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 등록 여부 확인 서류

□ 사업내용 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의 주요 부분(일정, 장소, 예산 항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음(양식 자유)

- 단, 사업 내용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 없음

□ 선정 취소

○ 선정 단체가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방치, 목적 외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단체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단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현황 등을 포함한 내용을 알려야 함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사업 중도 포기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을 취소해야 하며 지원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정 수급, 지도점검 결과, 중도 포기 등으로 지원을 취소한 사업이 있는 커뮤니티에 대하여 익년도 신정 체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2. 지도점검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필요시 외국인 동호회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동호회에 사업 진행보고서 및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도·점검 결과 운영지침 또는 위반사항 발견 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동호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동호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Ⅴ. 예산편성

1. 예산편성 총칙

□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 예산은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세 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예산 세 항목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하여야 함

□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편성 불가

○ 지원금은 외국인 커뮤니티가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동 등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은 편성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단순 소모품·홍보물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사업선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

- 지원금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받은 날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단체의 자체경비로 처리**(위반 시 회수)

□ 기간 내 집행

○ 지원금은 회계연도 독립원칙 및 결과보고서·정산 처리 기한에 따라 **사업종료일('26.11.30.)까지 집행**

2. 예산편성 기준

○ 지원금에 대해 운영비(80% 이상), 홍보비(10% 이하), 실비(10% 이하)로 항목을 각각 편성하여야 함

- 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중요자산(내용년수 1년 이상 내구성 물품) 및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동호회 심사·선정 시 사업비가 과대 반영되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기준 >

예산항목	세 항목	편성기준
운영비 (80% 이상)	임차료	행사 개최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임차료(일시적)
	재료비	문화·요리 체험 및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강사료	외부 강사 초청 비용(전북국제협력진흥원 초청강사료 지급기준 준용)
	보험료	행사 안전보험 등 가입비용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 물품 등 구입 비용
홍보비 (10% 이하)	인쇄홍보물	현수막, 리플렛, 배너 등 행사 홍보를 위한 인쇄홍보물 일체
	홍보물	행사 확산을 위한 홍보물·용품 제작·구매 경비
실비 (10% 이하)	실비	행사 참여자 식비·다과비 등(식비·다과비 1인당 9천원 이내 한도)

※ 각 항목별 지출 증빙자료는 '참고 지출 증빙자료' 참고(17 페이지)

○ 강사료 지급기준

- 강사료는 외국인 동호회 외부 인사에 대하여만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충족을 위한 강사 이력서, 프로필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강사료는 강의와 관련된 강의료, 원고료, 여비 등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있음
-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예방, 광범위 지역민 참여 등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진행 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사전 승인 필요하며,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강의만 인정

< 강사료 지급기준 >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최초1시간) 25 (초과 매시간) 12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최초1시간) 15 (초과 매시간) 8
3급	• 〈삭제〉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최초1시간) 10 (초과 매시간) 5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1시간) 8 (초과 매시간) 4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1시간) 6 (초과 매시간) 3

3. 집행 유의 사항

○ 영수증은 카드 사용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예산항목(운영비 ↔ 홍보비 ↔ 실비) 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 세 항목 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없이도 가능하나,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시 사전 승인 필요

○ 현금성 물품(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지원 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금에서 지급 불가

4. 지원금 교부 및 관리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선정된 외국인 동호회는 '교부 신청서(양식 5)'와 수정된 세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행사일로부터 2~3개월 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제출된 교부 신청서와 세부 사업계획서 등에 이상이 없을 시,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함

○ 지원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 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관리

○ 외국인 동호회는 교부된 지원금에 대해 별도 통장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외국인 동호회는 지원금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 사본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중요자산(내구성 물품) 구매 비용은 지원금으로 구매 불가하나,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 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인 물품

○ 지원금은 약정된 지원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하여야 함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외국인 동호회는 이에 따라야 함

□ 지원금 정산

○ 정산 주체 : 외국인 동호회

○ 정산 시기 : **행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9~10월 중 추진한 행사는 2026. 11. 30.까지 제출)

○ 정산 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gina@jbica.kr) 또는 우편(방문) 제출 등

○ 제출서류

1) 행사 최종 결과보고서 [양식 9]
(일자별 운영내용, 참여자 명부, 만족도조사, 활동사진 포함)

2) 지원금 정산서 [양식 10]

3) 지출 증빙자료 등

□ 지원금 반환 등

○ 불인정 금액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집행금액 불인정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잔여액 처리

- 사업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을 환수 조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거나,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지원금 환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양식1 **사업 신청서**

2026년 외국인 통호회 지원사업 신청서

커뮤니티 정보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010- 이메일: 주 소:		
	설립연도		사무실 운영여부	□ 예 / □ 아니오
	회원규모	(명)	세부 구성인원	임원 ____ 명, 일반회원___ 명
	홈페이지, SNS 등	(URL)		
	설립목적			
	주요활동			
	주요실적 (최근 3년)			
사업 개요	활동명			
	기간/일시			
	장소			
	참여대상			
	활동목적			
	주요내용			
	지원신청액	원	총 소요액	원

2026년도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_____(서명)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 1페이지 이내로 작성(자세한 사항은 '양식2 사업계획서'에서 기술)

양식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전 주의 사항]
- 사업 추진 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
- 당초 신청 예산과 달리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활 동 명	
기간/일시	
장 소	
참여 인원	총_____명
활동목적	
행 사 세부 내용	- 참석자 및 참석대상 - 일정표 - 행사내용 등 구체적 서술 ※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한 세부내용 작성 필요. 해당사항 심사에 반영 예정.

▮ 지원 신청 내용

- 총 예산 : 원
- 산출내역

항목	세 항목	내용	산출기초		
			단가(원)	개수/횟수	소계
총계					
행사 운영비		*임차료(예시)*			
		음향 설치 등			
홍보비		*현수막*			
실비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_____(서명)

양식3

회원 명부

연번	국 적	거주 자격 (비자)	이 름	연 락 처	주 소 (00시, 또는 00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양식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및 결과(정산)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작성·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동일·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는 물론,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제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동호회명 : _____

대 표 자 : _____(서명 또는 인)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양식5 교부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동 호 회 명			
대 표 자 명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소 요 경 비 (원)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	별첨(양식2)		

「2026년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운영지침」의거 위와 같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 _____(인)

붙임 1.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 등록 여부 확인 서류 일체

양식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체류자격, 전화번호, 계좌번호

❑ 수집이용 기관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처리(신청–접수–심사–결정–지급–자격확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등 그 밖에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양식7 **설문조사(외국인 동호회 대표자용)**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설문조사 (외국인 동호회 대표자용)

안녕하세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입니다. 본 설문지는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경청하고자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향후,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대표자분의 귀한 시간을 잠시 내어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지원이 동호회 성장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이 전북 긍정적 인식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진흥원의 지원을 통하여 동호회 회원과 기타 행사 참가자들의 활발한 교류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이번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향후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식8 **설문조사(행사 참가자용)**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설문조사 (행사 참가자용)

안녕하세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입니다. 본 설문지는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경청하고자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향후,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대표자분의 귀한 시간을 잠시 내어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이 회원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진흥원의 지원을 통하여 전북 거주에 대한 자긍심,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향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식9 **결과보고서(선정단체 행사 종료 후 제출)**

결과보고서

동호회명			
행사명			
일시		장소	
행사결과 세부사항			

·행사 추진 목적

·행사 주요 내용

- 참석자 및 참석인원
- 행사 일정표
- 행사 주요 내용
- 행사 관련 <u>사진, 동영상, 보도자료 총 3부 이상</u> 반드시 첨부
- 행사 참석 동호회 회원 명단
- <u>행사 참석 동호회원, 기타 참가자 등 설문조사 실시 및 원본 제출</u>

·행사 후 신규 회원 모집, 확장 운영 등 잘된 점

·행사 운영 중 아쉬웠던 점

※ 결과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 행사 종료 후 <u>2개월 이내에 제출</u>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10 **지원금 정산서(선정단체 행사 종료 후 제출)**

지원금 정산서

1. 동호회명 :

2. 사 업 명 :

3. 사업기간(일시) :

3.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교부액			집 행 액			잔 액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4. 지원금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예산항목	세 항목	집행일시	집행액	세부집행 내역
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 보고합니다.

2026. . .

동호회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양식11 강사 참석확인서

행사명	
일시/장소	
주관단체 명	

본인은 2026년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행사명) _____ 에 참여하였으며, 행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시 위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계좌정보		청구 확인 (서 명)
원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2026년 월 일

성명: _____ (인)

참고 지출 증빙자료

구 분	증빙 자료 유형
카드	1. 카드 영수증 2.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3. 증빙사진(수량 확인)
계좌이체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처 통장사본(수령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확인 용도) 3. 계좌이체확인증(수령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확인 용도) 4.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5. 증빙사진(수량 확인) ※ 지로 납부의 경우 지로 납부 청구서 및 영수증 필수
강사료	1. 참석확인서(필수) 2. 거래처 통장사본(수령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확인 용도) 3. 계좌이체확인증(수령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확인 용도) 4. 125,000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원천세 일괄 신고 예정
주의사항	1. 지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 2. 지원금은 대표자/단체 명의 계좌에서 직접 집행(개인 또는 단체 관계자 명의 계좌로 선이체(경유) 후 집행 금지) 3. 개인 카드 사용 후 사용금액 이체 금지 **4. 현금 인출 금지** 5. 수기(세금)계산서 사용 불가 6.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7.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작성 - 올바른 사례 : 00물품 * 50개 * 20,000원 = 1,000,000원 (○) - 잘못된 사례 : 00물품 * 1식 = 1,000,000원 (×)